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PL) 대응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unterplan
for product liability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박 노 국* · 이 성 호*

Roh-Gook Park* · Song-Ho Lee*

Abstract

Product liability as a process has developed significantly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afety of the product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modern corporate management. The rapid introduction of product liability has recently been a prevalent phenomenon, as global changes arising from rapi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he economy have resulted in a highly interconnected world economy.

This thesis was established, based on current literature and business consulting cases in the position of companies, and is one of the operating subjects in a system for legal responsibility in manufactured products.

Keywords: Product liability, Product Safety, A step of strategy

* 상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1. 서 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법적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사항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 법안이 통과되어 2002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다. 그 후 약 4년간의 시간이 경과한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안전에 관한 역량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관련된 많은 기관과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안전에 대한 방법이 사회적으로 미흡하고 기업이 전반적으로 그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 초기에, 정부와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설문조사와 연구활동,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여 왔다. 그러나 그 연구결과와 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품안전경영체제(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구축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설적으로 품질경쟁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제품의 안전성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며,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론을 이해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품안전 수준에 관한 우리기업의 현 수준을 잘 이해한 후에 중소기업들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전한 제품 생산을 통하여 지속경영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일 일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과는 다르게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설계자, 제조자, 판매자, 설치자 등은 제공된 제조물의 설계, 제조, 판매, 설치의 각 단계에서 제조물 결함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외적인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제조자 및 가공·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절대적 책임은 아니다. 설계자, 제조자, 판매자에 의하여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소비자는 과거의 각종 관련 법령보다는 피해를 입었을 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제품안전에 대하여 각 단계에서 시스템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 사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에 제조물 책임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한 결함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와 제조업자와의 분쟁을 처리해 주는 법적인 기준이 된다.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결함의 원인을 소비자가 제시하여 입증해야 하였으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없음에 대한 객관적 입증은 제조업자가 지게 되어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보다 용이하고, 결함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기업에게는 잠재적 결함에 대하여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제조물책임 사전·사후 대응활동을 통해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위한 또 다른 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動産」을 말하며,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動産」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말하고, 일정 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有體物은 물론, 전기, 열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도 포함한다. 이는 「動産」에 해당하는 경우 완성품인지, 부품이나 원재료인지를 불문하며, 대량 생산되는 공업제품은 물론 수공업품, 중고품, 재생품도 적용대상이 되고, 소비용 제품, 업무용 제품, 산업용 제품 등도 용도에 관계없이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가공」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그 가치를 더한 것을 말하며, 「제조」는 제품의 설계·제작·검사·표시를 포함하는 일련의 행위로,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고 서비스를 제외한다.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물건으로는 먼저 부동산이 있는데 아파트, 빌딩, 교량 등으로서 PL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 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은 동산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된다. 다음으로, 미가공 농산물(임·축·수산물 포함)로서 제조·가공이 아니라 생산의 대상으로 인식되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여기에서 「가공」과 「미가공」의 구분은 개별적으로 당해 제조물에 추가된 행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다.

제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적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결함」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안전성」은 원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없는 것을 말하지만 다른 재물을 훼손할 위험성이 없는 것도 포함된다. 결국 결함은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다른 재물에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애 등은 결함으로 볼 수 없다.

결함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이것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설계도나 시방서에 합치하지 않게 제조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둘째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이것은 합리적으로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셋째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것을 말한다.

2. 제조물책임제도 운영현황

현대는 제품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쟁사회이다. 제조물책임의 국제적인 흐름으로 주요 내용은 징벌적배상의 채택여부, 1차 농수산물의 제조물 여부, 배상한도 의 채택여부 등으로 차이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주변국인 일본의 제조물책임법과 유사한 민법특례법의 형태와, 징벌적배상의 배제, 제척 기간의

동일, 제조물대상, 4개항의 면책사항 등이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기업은 제조물 책임에 기초한 기업의 책임을 이해하고, 기업에 부과되는 기업 제조물책임 회피책에 대한 대책 강구와 제조물책임 클레임·소송 방어책에 대한 중점대책이 필요하다.

리콜(Recall)제도는 특정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예방 위해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의 수거, 파기 및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서 사전예방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

리콜제도는 위해발생 여부에 따라 제품결함은 발견되었으나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적 리콜과 결함제품의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된 후에 위해의 확산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적 리콜로 나눌 수 있으며, 강제여부에 따라, 제조, 수입, 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스스로나 정부의 권고에 의해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의 명령에 의해 시행하는 강제적 리콜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국내 리콜사례

연도	제조사	제품명	리콜사유	리콜수량	배상금/ 추정손실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2004	LG전자	전기밥솥	폭발위험	전량회수	21억원	밥솥 90%회수 / 리콜 광고비 21억/ 생산중단
2005	LG화학	노트북	리튬배터리 과열로 화재위험	28,000개	3조676억	생산 2개월 중단/ 분기 영업이익 전년대비 36%감소/ 적자 352억원
2006	CJ푸드사	집단식중독	27개 학교급식소 집단식중독 발생		소송 중	학교급식 네트워크 집단소송제기 및 사회적이슈
2006	현대자동차	아반떼XD	시계확보장치 부적합 결함		10억원	기업이미지 타격
2007	에버랜드	눈썰매장	충격방지 장치 미설치로 썰매장에서 추락	중상자 발생	6억원	6억원 손해배상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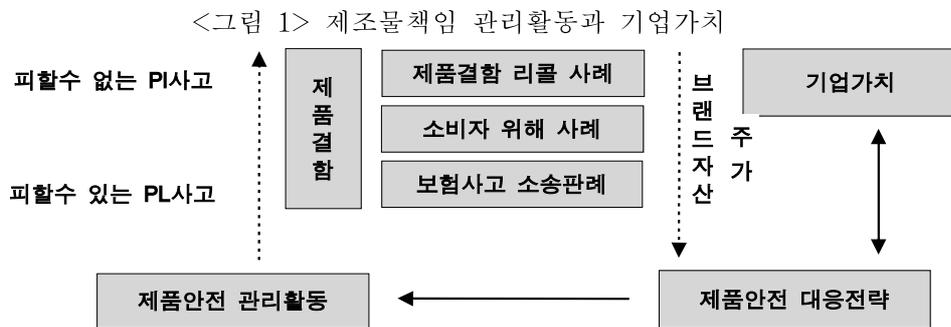
미국 법률정보사이트(www.lexis.com)에 의하면, 2000~2005년 중 국내 6대수출기업의 미국 내 소송 총 694건 중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은 138건으로, 특허관련 소송 21.18% 다음으로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2000년 이후 소보원에 접수된 결함에 의한 리콜사례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04년 잇따른 전기밥솥 폭발사고로 곤욕을 겪었던 LG전자가 결국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해온 전기밥솥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OEM방식을 통해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범해온 재벌의 '저인망 확장전략'이 압력밥솥 폭발에 따른 제품안전사고로 인해 벽에 부딪힌 셈이다. LG전자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LG전자가 직접 생산하는 고급형 IH압력밥솥뿐 아니라 OEM 방식으로 판매해온 중저가 전기밥솥 사

업도 포기하고, 이와 함께 자사 대리점 및 하이마트 등 전자전문점에 비치된 3만 여대의 전기압력밥솥 회수에 들어가 90%이상 회수 조치하였다.

이후, OEM방식으로 판매해온 선풍기, 가스레인지, 가습기 등 소형가전 사업까지도 수익에 비추어 사고가 나면 "LG"브랜드에 큰 타격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제품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업자체를 포기하게 된 실증적인 사례가 된 셈이다.

2.1 제품결함과 기업가치의 관계분석



앞에서 살펴본 제조물책임 사고사례를 통해 기업의 PL활동과 기업가치에 관한 상관관계를 <그림 1>과 같이 도출하고, 모형의 실증과 이해를 위해 대표적인 제품결함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분석, 검토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일보 2006.4.19일자 리콜사례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인 독일의 제약회사인 바슈롭은 심각한 안(眼)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 세척액에 대해 자사제품은 안전하다며 계속해서 버티다가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압력이 지속되자 어쩔 수 없이 2006.4.17 리콜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바슈롭은 한국을 포함해 리뉴모이스취락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의 일시적인 회수를 요청하고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회사는 리콜이 자발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회사가 미적거리는 사이 미 최대 약품 소매 유통업체인 월그린사는 산하 모든 매장에서 모든 리뉴 브랜드제품의 철수 조치를 취했다. 최대 소매업체망인 월마트도 리뉴 모이스취락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그 사이 동사 주가는 2000년 이래 가장 큰 폭인 14.64%나 하락했다.

한편, 존슨&존슨은 1982년 감기약 타이레놀에 누군가 독극물을 집어넣어 이를 복용한 소비자가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회사는 사건 전모를 언론에 즉시 공개했다. 2억 4000만 달러를 들여 약병 3100만개를 자진 리콜하고 독극물을 넣지 못하게 약병을 교체했다. 홍보실 전화 회선을 늘려 소비자들의 문의에 적극 응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믿을 만한 기업으로 인식됐으며 시장점유율도 반년 만에 100% 회복됐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긴급조사 속에 이루어진 리콜로 브리지스톤은 최소한 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도쿄증시에서 주가는 사고 직후 3일간 15%나 폭락했다. 특히 사고 타이어의 60~70%는 포드자동차에 장착됐으며 이로 인해 관련 업체인 포드차도 밀려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시달리는 등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동 사건은 제품의 품질관리가 해당기업의 이익과 주가관리는 물론 관련 업체들의 신용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ISO 9001:2000의 품질경영의 정의로는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정되는 활동”이라고 되어있다. 품질경영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해서, 이 요구를 만족할 품질을 상품기획안에 명시하고 이것을 개발·설계, 생산 및 판매를 통해서 실현하여, 각 단계에서 평가·확인하는 체계적 활동과, 이러한 품질의 평가·확인 결과를 이해 관계자에게 확증을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PL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3.1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강원도에 위치한 제조업체 중에서 지난 8년 동안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PL,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부서 담당자(컨소시엄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업은 58개사이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에 의하여 PL제도에 대한 조직문화, 추진, 시스템구축, 시스템수준, 제품안전검토, 제품안전확보, 제품안전경영 시스템운영, 제품안전의 효과와 필요성인식에 대한 현황을 알아본다. 또한 상관관계분석에 의하여 조사대상기업의 제품안전 조직문화와 제품 안전 활동의 효과·필요성, 제품안전검토 활동과 제품 안전 활동의 효과·필요성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고, 분산분석에 의하여 기업의 주력 제품과 제품 구조에 따라 제품안전검토 활동과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기업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나타나있다.

<표 2> 조사기업의 일반적 특성

범 주		빈도	비율(%)	범 주		빈도	비율(%)
주력제품	부품가공	8	13.8	ISO 9000 인증	획득	12	20.7
	중간 산업재	14	24.1		미획득	46	79.3
	완제품	34	58.6	ISO 14000인증	획득	12	20.7
	기타	2	3.4		미획득	46	79.3
제품구조	1-2가지 소량생산	10	17.2	품질등급	1등급	44	75.9
	다품종소량 생산	20	34.5		2등급	10	17.2
	소품종대량 생산	12	20.7		3등급	2	3.4
	표준품대량 생산	14	24.1		기타	2	3.4
	기타	2	3.4				

3.2 실증분석의 상관관계 분석

3.2.1 제품안전 조직문화와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과의 관련성

조사대상기업의 제품안전 조직문화와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서와 같이 제품안전 조직문화 의지와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의 위험성만이 $r=.441$ 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제품안전 조직문화와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과의 관련성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		
		중요성	위험성	필요성
제품안전조직문화	의지	.122	.441**	.064
	인지	.199	.076	-.024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적임

3.2.2 제품안전검토 활동과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과의 관련성

조사대상기업의 제품안전검토 활동과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서와 같이 제품안전검토 활동의 수집, 조사, 실시와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의 중요성과 각각 $r=.327$, $r=.308$, $r=.260$, 제품안전검토 활동의 실시와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의 위험성 $r=.268$, 그리고 제품안전검토 활동의 수집, 조사, 실시와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의 중요성과 각각 $r=.384$, $r=.349$, $r=.31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제품안전검토 활동과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과의 관련성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		
		중요성	위험성	필요성
제품안전검토 활동	수집	.327*	.253	.384**
	조사	.308*	.238	.349**
	실시	.260*	.268*	.316*
	평가	.186	.098	.248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적임,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임

3.2.3 분산분석 결과

1) 기업의 주력제품에 따른 차이

조사대상 기업의 주력제품(부품가공, 중간 산업재, 완제품, 기타)에 따라 제품안전검토 활동의 수집, 조사, 실시, 평가 그리고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의 중요성, 위험

성, 필요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5>에 나타나 있다. 주력제품에 따라서 제품안전검토 활동의 수집, 조사, 실시, 평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의 중요성(F=3.168, p=.032)과 필요성(F=4.328, p=0.08)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표 5> 주력제품에 따른 차이

종 속 변 수		F	P
제품안전검토 활동	수집	.625	.602
	조사	.202	.895
	실시	.774	.514
	평가	.122	.947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	중요성	3.168*	.032
	위험성	2.489	.070
	필요성	4.328**	.008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적임,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임

2) 기업의 제품구조에 따른 차이

조사대상 기업의 제품구조(1-2가지 소량생산, 다품중소량 생산, 소품중대량 생산, 표준품대량 생산)에 따라 제품안전검토 활동의 수집, 조사, 실시, 평가 그리고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의 중요성, 위험성, 필요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주력제품에 따라서 제품안전검토 활동의 수집, 조사, 실시, 평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의 중요성(F=3.168, p=.032)과 위험성(F=5.000, p=0.002)만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제품구조에 따른 차이

종 속 변 수		F	P
제품안전검토 활동	수집	1.547	.202
	조사	2.464	.056
	실시	1.191	.326
	평가	1.053	.389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	중요성	1.007	.412
	위험성	5.000**	.002
	필요성	1.211	.317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적임

4. 결 론

본 연구는 강원도에 위치한 제조업체 중에서 지난 8년 동안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 기업인 58개사를 대상으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의 PL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 결과는 조사대상 기업의 제품안전에 대한 방침에서는 방침은 있으나, 전 조직구성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28개사(48.30%), 방침은 없으나, 제품 안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기업이 12개사(20.7%)로 나타나고 있으며, 방침이 있고 전 조직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 10개사(17.2%)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자의 제품안전에 관한 의지에는 의지가 있거나, 확고한 의지를 가진 기업이 각각 20개사(34.5%)와 18개사(31.0%)로 나타나고 있고, 의지가 없는 기업도 8개사(13.7%)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인지에는 이 보통 이상 인지하고 있는 기업이 50개사(86.6%)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르고 있는 기업이 8개사(13.4%)로 조사되었다.

둘째, 상관관계분석결과는 제품안전 조직문화 의지와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의 위험성만이 $r=.441$ 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품안전검토 활동의 수집, 조사, 실시와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의 중요성과 각각 $r=.327$, $r=.308$, $r=.260$, 제품안전검토 활동의 실시와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의 위험성 $r=.268$, 그리고 제품안전검토 활동의 수집, 조사, 실시와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성의 중요성과 각각 $r=.384$, $r=.349$, $r=.31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산분석결과는 주력제품에 따라서 제품안전검토 활동의 수집, 조사, 실시, 평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의 중요성 ($F=3.168$, $p=.032$)과 필요성 ($F=4.328$, $p=0.08$)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주력제품에 따라서 제품안전검토 활동의 수집, 조사, 실시, 평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안전활동의 효과·필요의 중요성 ($F=3.168$, $p=.032$)과 위험성 ($F=5.000$, $p=0.002$)만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지 이제 8년이 지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제조물 책임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책임부서는 물론 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산학연 컨소시엄을 수행한 연구개발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기업 및 품질관리 부서가 있는 선두그룹의 기업들로 실시한 연구 결과이므로 다음 연구에서는 보다 업종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5. 참 고 문 헌

[1] 박노국, PL(제조물 책임법) 대책에 대한 사례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 춘

계 학술대회.

- [2] 안숙규, “품질경영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1994, p. 32.
- [3] 이명선,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S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4, p. 20.
- [4] 이선희,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과 전략수행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대학원, 1996, p. 18.
- [5] 이상복, 제조기업의 PL(제조물 책임법)법에 대한 준비 및 대처방안, 품질경영학회지, 제25권 제4호, 1997. p. 35.
- [6] 윤효근, HACCP를 이용한 식품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pp. 85~87.
- [7] Lynn J. Loudonback & John W. Goebel, “Marketing in the Age of Strict Liability,” Journal of Marketing, Vol. 38 (January, 1974) p. 65.
- [8] William C. Hoffman, Susanne Hill-Arning, Guide to Product Liability in Europe, The Cologne Re., 1994, p. 77.
- [9] 전자부품·재료설계인력교육센터(EMDEC), 「PL 제조물 책임 실무자 양성과정」. p. 53.
- [10] 중소기업인증센터, 「제조물책임 대책」, 2002, p. 15.
- [11] 중소기업진흥공단, 「Product Liability 지도모델」, 2001, p. 17.
- [12]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대응 가이드」, 2001, pp.55-60.
- [1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 가이드」, 2002, p. 3.
- [14] 하중선, 최병록,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 대책」, 한국표준협회, 2000. pp. 36~38
- [15] 한국품질보증원, 「품질보증」, 2002, p. 35.